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1187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3.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0. 8. 24. C에게 45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3., 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C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D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2012. 12. 20. E대부에게, E대부는 2015. 10. 13.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위 양도 무렵 각 채권양도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9,824,385원 및 그 중 4,191,492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4.자 2016차전9764 지급명령).

다. C의 아버지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5. 7.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F의 배우자인 G, F의 자녀인 C, 피고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1. 3. 26.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당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H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성중

별지